

---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견기업계 세제건의

---

2016. 6

## (건의배경)

- 최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아시아 주요 신흥국 성장에 따른 수출경쟁력이 약화
- 대내적으로는 내수침체와 기업부실이 누적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불가피한 상황
- 노동시장의 경우, 취업애로계층이 109만명에 이르고,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고용 급감도 예상<sup>1)</sup>되는 등 신규 채용 문제도 우려
  - \* 2016년 기업 신규채용 예상: 2015년과 비슷(55.6%), 2015년보다 감소(35.8%), 증가(8.6%)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15.12)<sup>2)</sup>
- 이러한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기업 투자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설비투자는 금년 들어 증가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며, 민간 R&D투자 성장세도 제약 (한국은행, 2016.4)<sup>3)</sup>
  - \* 설비투자 실적: 전월('16.1월)에 비해 6.8%감소 (통계청, 2016.3)<sup>4)</sup>
-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구조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 이에, 어려운 투자환경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R&D·투자·고용 등 '꼭 필요한 지원제도'는 유지·개선할 필요

1)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2016년 업무보고  
2)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정년연장이 기업 채용에 미치는 영향', 2015.12.  
3) 한국은행, '2016년 경제전망(수정)', 2016.4  
4) 통계청, '2016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16.2

## (건의요약)

	구 분	현 행	건의안
연구 개발	R&D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조특법 제10조제1항1호, 2호	중소 30%, 일반 20%	중소 30%, 중견 25%, 대기업 20%
	R&D세액공제 (증가분방식) 조특법 제10조제1항3호	중소 50%, 일반 40%	중소 50%, 중견 45%, 대기업 40%
	R&D세액공제 공제대상 (해외마케팅비용)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신 설	연구개발관련 해외마케팅비용 R&D공제대상에 포함
	R&D세액공제 최저한세 조특법 제132조제1항제3호	중견, 대기업은 R&D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중소는 제외)	중견기업도 최저한세 제외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R&D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신 설	지방소재 중소·중견 연구인력에 한해 인건비 공제액 2배로 적용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조특법 제9조	2013년 일몰	재시행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신설	신 설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연구요원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중소기업만 비과세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소·중견기업 자사브랜드 수출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신설	신 설	자사브랜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신설
투자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 외	주요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 환경, 의약품 시설) '16.12.31 일몰예정	일몰연장
	설비투자 가속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16.6.30일몰예정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까지 확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4	중소기업만 해당	중견기업까지 확대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내국법인 7%공제 ( '16.12.31까지)	일몰연장 및 대기업, 중견기업 차등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	중소기업은 일몰없음 중견기업은 '16.12.31까지	중견기업도 관세감면 영구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만 해당	서비스업 중견기업까지 확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기준율 법인세법 제56조	과세기준율 30% 또는 80%	대기업 중견기업 과세기준율 차등

	구 분	현 행	건의안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범위 법인세법 제56조	해외투자 M&A는 투자에서 제외	해외투자 M&A도 투자대상에 포함
고용	청년고용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5	중견기업 기준: 매출액 3천억원 미만	5천억원까지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70%감면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확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중소기업만 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벤처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조특법 제16조의2 외	벤처기업 근로자만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스톡옵션 과세시기를 주식처분시로 완화
구조 조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주식취득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경우 간주취득세 적용배제
	이월결손금 승계 법인세법 제44조의3	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 소득금액내에서 공제 불가	적격합병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 구분없이 공제 허용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요건 법인세법 제76조의8	100%	80%
가업 승계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상증법 제18조제2항	·중소·중견(매출3천억) ·500억원 한도	·중소·중견(매출5천억) ·1,000억원 한도
	가업승계주식 할증평가 상증법 제63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중소기업은 '17.12.31까지 할증배제)	중소·중견기업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상증법 제18조제2항	사전요건 판단시 업종변경 전 업력은 불인정	업종변경 전 업력 포함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 상증법 제18조제4항	50%(상장 30%)	40%(상장 20%)로 완화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상증법 제18조제5항	정규직 근로자 중견 120%, 중소 100%유지	비정규직까지 완화하거나 동일과 같이 임금총액으로 유지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상증법 제71조	증여세 5년, 가업상속 15년	증여세도 15년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 한도 조특법 제30조의6	100억	500억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상증법 제18조제2항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는 경우만 세제지원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인이 승계하는 경우도 공제 허용
	공익법인 주식출연 증여세 요건 상증법 제16조제2항	발행주식총수의 5%	발행주식총수의 30%
	상속·증여세율 인하 상증법 제26조	최대 50%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증법 제45조의3	중소기업간 거래만 과세제외	중소·중견기업 과세제외	

# 목 차

I. 연구개발 .....	1
1.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구간 신설 (신성장·원천기술, 증기분방식) .....	2
2. 연구개발관련 해외마케팅비용 R&D공제대상에 추가 .....	4
3. 연구개발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 .....	5
4.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R&D세액공제 인건비 우대 .....	7
5.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재시행 .....	8
6.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9
7. 연구요원 소득세 비과세 중견까지 확대 .....	11
8. 중소·중견 자사브랜드 수출기업 연구개발지원 신설 .....	12
II. 투자 .....	13
1. 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	14
2.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까지 확대 .....	15
3.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	16
4.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차등 .....	17
5. 중견기업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영구화 .....	18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서비스업 중견기업까지 확대 .....	19
7. 기업소득환류세제 중견·대기업 과세기준을 차등 .....	20
8. 기업소득환류세제 해외투자·M&A 투자범위에 포함 .....	21
III. 고용 .....	23
1. 청년고용증대세제 중견기준 매출액 5천억원까지 확대 .....	24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견까지 확대 .....	26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견까지 확대 .....	27
4.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부담 완화 .....	29

IV. 구조조정 외 .....	31
1. 사업재편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	32
2. 이월결손금 승계 확대 .....	33
3.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요건 완화 .....	34
4. 국외특수관계법인 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손금산입 허용 .....	35
V. 가업승계·일감몰아주기 .....	36
1.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37
2. 중소·중견 가업승계 주식 할증평가 폐지 .....	38
3.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판단시 업종변경 전 업력포함 .....	40
4.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 완화 .....	42
5.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 .....	43
6.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상속세와 동일하게 적용 .....	44
7.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한도 100억 → 500억으로 확대 .....	45
8.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인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	46
9. 공익법인 주식출연 증여세 과세기준 5% → 30%로 완화 .....	47
10. 상속·증여세율 인하 .....	48
11.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	50

**연구개발**

# 1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구간 신설 (신성장·원천기술, 증가분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 현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 30%, 일반 20% 공제 (“18.12.31까지)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①증가분방식과 ②당기분방식 중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며, 당기분방식에만 중견기업 구간 존재
    - ① 증가분방식: (해당 과세연도 비용 - 직전 과세연도 비용) × (중소 50%, 일반 40%)
    - ② 당기분방식: 해당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25%\*
- \* 중소(유예포함): 25%, 중견(진입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이상 이면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 8%, 대기업: 2~3%

## □ 문제점

- 중소 → 중견기업으로 원활한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으로 연구개발, 시설투자, 고용, 가업승계 관련 세제\*에 중견기업 구간이 신설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방식),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 반면, 중소 → 중견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증가분방식 공제는 여전히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분류
-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이라는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과 증가분방식에도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할 필요

## □ 건의사항

### ○ 중견기업 구간 신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현행) 중소기업 30%, 일반 20% →(건의) 중소기업 30%, 중견 25%, 대기업 2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방식)

(현행) 중소기업 50%, 일반 40% →(건의) 중소기업 50%, 중견 45%, 대기업 40%

## 2 연구개발관련 해외마케팅비용 R&D공제대상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 현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으로 규정

\* 연구직원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 연구·시험용 시설이용에 필요한 비용 등

- 연구개발 관련 리서치·마케팅 비용은 세액공제비용에서 제외

### □ 문제점

-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중요
- 중소·중견기업은 개발한 기술을 갖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더라도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바이어발굴과 정보획득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B2C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한 상품을 성공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마케팅은 필수인데, 현행 세법에서는 마케팅을 연구개발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매년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B2C 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비자 니즈파악, 시장조사 등 리서치 쪽 투자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리서치분야를 R&D투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 CEO, 중기청장 간담회 ('16.2.12) -

### □ 건의사항

- 연구개발관련 해외마케팅비용을 R&D공제대상에 추가

### 3 연구개발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 □ 현황

- \* 최저한세: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 '12년부터 중견·대기업에 한해 연구개발세액공제에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 최저한세로 감면 배제하는 세액은 5년 이내 이월하여 공제하며,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과 이월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 문제점

-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연구개발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을 받게 되어 R&D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일부금액이 감면에서 제외, 이월공제만 늘어나는 상황

“조세특례제한법에 중견기업 구간을 만들어도 최저한세를 적용받게 되면 이월공제만 늘어나게 됩니다. 법인세가 약 30억원 정도인데 절반이상을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세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견기업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데(설비투자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세액공제가 최저한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기업으로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 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관련 전문가·회원사 간담회('15.3.25)-

- 또한, 현재 이월공제기간이 5년인데,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1년 소급공제와 20년 이월공제, 캐나다는 3년 소급공제와 20년 이월공제를 적용
- 프랑스는 3년간 이월하되 미사용분에 대해 환급하며, 영국은

이월공제를 무기한으로 운영<sup>5)</sup>

- 연구성과가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이월공제기간(5년)은 부족

## □ 건의사항

- (1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
- (2안) 최저한세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5년 → 20년으로 연장

---

5) 노민선, 이삼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제9권 제2호 pp.49-76, 2014.12

## 4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R&D세액공제 인건비 우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시행령 별표6)

### □ 현황·문제점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개발이 핵심이나 전문연구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지방소재기업인 경우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

“판교이남으로 내려가면 젊은이들이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특히 비수도권 중견기업들이 역량을 갖춘 R&D전문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 중견기업 R&D경쟁력 고사위기, 탈출구 확보 시급, 아시아경제 ('16.2.22) -

- 중견기업 조사결과,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전문인력부족(59.0%), 수도권기업은 높은 유지비용(52.3%)이 연구개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으며,

- 지방소재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이 연구인력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 (중견련 자체조사, 2016 (226개사 응답))

### □ 건의사항

-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 상 인건비 공제를 2배로 적용

## 5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재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 현황

- 연구·인력개발비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매출액 3%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제도였으나 '13년에 일몰

### □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지속적인 연구 개발투자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필수

“우리 기업은 3년간 약 5.74% 정도를 R&D에 투자해왔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10% 까지 투자금액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견기업 CEO, 제2차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 ('15.12.16) -

-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 시 비용과 리스크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현재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부진으로 인해 투자애로가 더욱 심화

“현재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R&D투자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망설여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 중견기업 CEO, 중견기업인(3천억원 미만)간담회 ('16.4.8) -

-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는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기업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던 제도인 만큼 재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 □ 건의사항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재시행

## 6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patent box)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 □ 현황·문제점

-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규모, 연구원 수, 특허 수 등은 OECD 30개국 중 5위로 세계적인 수준이나, (미래부, 2015)<sup>6)</sup>
  - 지적권 보호, R&D투자대비 기술수출 등은 26위로 취약한데 이는 최종성과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D결과물의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
    - \* 중소기업 R&D 성공률 95.6% > 사업화 성공률 50.2% (중기청, 2016)<sup>7)</sup>
- 현행 연구개발지원제도는 R&D자체를 활성화할 수는 있지만 기술이전, 사업화 등 실제 경제에 이바지하는 단계까지의 지원은 어려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sup>8)</sup>
-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사업화 비율은 6.8%에 불과하고, 사업화 소요비용은 기술획득비용의 약 24배가 지출되는데, (산업연구원, 2011)<sup>9)</sup>
  - 현행 R&D세제는 주로 기술개발단계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는 부족
- 주요국의 경우 아일랜드가 특허관련 소득에 대한 혜택(patent box)을 '73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 프랑스('01년), 벨기에('07년), 네덜란드('07년), 스페인('08년),

6)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2015.12.21 보도자료

7) 중소기업청,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6.2.1

8)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국가별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차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Patent Box제도를 중심으로-', 2014.12

9) 박종복, 조윤애 외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1.12

영국('13년)도 도입하여 운용 중인데,

- 영국은 제도 도입 이후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지재산권 등록건수가 독일기업 27%, 일본기업 19%가 증가(산업연구원, 2013)<sup>10)</sup>
- 우리도 제도를 도입한다면,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 되어 과학기술이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도모할 것으로 기대

## □ 건의사항

-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10) 산업연구원, '특허박스(Patent Box)제도의 해외사례와 국내도입', 산업경제분석, 2013.11

## 7 연구요원 소득세 비과세 중건까지 확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영 제12조제12호)

###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 중건기업이 연구개발시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기술인력 부족'(37.2%)으로 조사되었는데,
  - \* 기술개발 애로사항(제조업) : 전문기술인력부족(37.2%) > R&D세제혜택 감소(25.2%) > 중건기업 R&D사업 부족(17.9%) 순으로 응답
  - 업력이 길어질수록 연구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 증가
  - \* 연구인력 부족 응답비율: 중건 진입 10년 이상 경과(39.7%) > 5년 이상~10년 미만(35.4%) > 5년 미만(32.1%) (중기청·중견련, 2013)<sup>11)</sup>
- 일정수준 이상 연봉과 복지를 갖춰도 '기업인지도'를 중시하는 구직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고급인력난을 해결하는데 한계
- 기업이 아닌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 건의사항

- 중건기업 연구요원도 소득세 비과세

11) 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3 중견기업 애로요인 실태조사'

## 8 중소·중견 자사브랜드 수출기업 연구개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 □ 현황·문제점

- 현재 다수 중소·중견기업이 OEM, ODM방식<sup>12)</sup>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 소비재인 경우 국가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브랜드 개발이 필수
- 실제로 자사브랜드 수출기업은 OEM, ODM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우위관계 선점<sup>13)</sup>
- 다만, 브랜드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해외마케팅이 병행되어야 하나 판로개척, 인력·자금 확보 등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브랜드 개발을 수행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검토가 필요

### □ 건의사항

- 자사브랜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지원 신설

12)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ODM(제조자 개발 생산): 설계 개발 능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 업체에 상품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방식

13) 원종현, 정재은, 양희순, '자사브랜드 부착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탐색적 사례분석',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1호, pp.199-210, 2015.2

**투자**

---

# 1 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 □ 현황

-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 공제가 '16.12.31 일몰예정

## □ 문제점

- 중견기업이 핵심역량을 확보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는 필수
- '14년 기준 중견기업 69.3%가 기업별 평균 133.0억원, 총 27조 4,290억 원을 설비투자<sup>14)</sup>
  - 업종별은 제조업(87.1%), 비제조업(54.8%), 수출여부별은 수출기업(85.8%), 내수기업(58.4%)이 투자
- 반면, 경기악화, 내수부진으로 중견기업 설비투자 실적지수는 102.5% → 97.0%으로 5.5p 감소<sup>15)</sup> (2016.1월 기준)
- 3%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려면 매년 5%대 설비투자 확충이 필요하지만 최근 설비투자 부진으로 적정 증가율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한국은행, 2015)<sup>16)</sup>
- 무엇보다 중소기업 졸업 직전기업의 설비투자 비중(96.5%)이 가장 높은 만큼<sup>17)</sup>, 제도 연장을 통한 성장촉진 필요

## □ 건의사항

- 일몰연장 (현행) '16.12.31까지 → (건의) '19.12.31까지

14) 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6.5

1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3월 경기전망조사', 2016.3

16) 한국은행, '최근 설비투자 현황의 평가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15.12

17) 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4 중견기업 현황', 2015.1

## 2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까지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 현황

- \* 가속상각: 기업이 고정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비용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이 '16.6.30 일몰예정

### □ 문제점

-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첨단설비촉진제도(즉시상각)를 도입하여 55개 기업, 138건 지원계약을 체결 (무역협회, 2015.3)<sup>18)</sup>
- 중소·중견기업은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등 투자활성화가 필수 이므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허용이 필요
-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지속정비를 통해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많이 축소된 만큼,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가 요구 (경제계 기활법 공동건의문, 2015.8)<sup>19)</sup>

### □ 건의사항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까지 확대

18) 한국무역협회, '日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한 사업재편 실적과 시사점', 2015.3.17

19) 중기중앙회, 중견련, 대한상의, 전경련, 상장협의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한 의견, 2015.8

### 3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 현황

- (상생결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 시 지급금액의 0.1% 또는 0.2% 세액공제 ('16.1.1부터 '17.12.31까지)

\* 2·3차 협력사도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유통하는 시스템

- (중견기업 수·위탁거래) 중견기업 65.6%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으며, 1차 협력사(34.3%), 최상위 원사업자(22.7%), 2차 협력사(8.1%)에 위치 (제조업기준) (중기청·중견련, 2016)<sup>20)</sup>

#### □ 문제점

-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구조는 원사업자(대기업), 1차협력사(중견기업), 2·3차 협력사(중소기업)로 이루어진 수직적·다단계 구조
- 2·3차 협력사로 성과가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 간에 상생협력을 정착시키려면, 1차협력사인 중견기업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재 초기단계인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위해서도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
- 또한, 자금여력과 대응이 취약한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결제한 상생결제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2·3차 협력사까지 지급하려면 자금유동성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 건의사항

-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 → 중견까지 확대

20) 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6.5

## 4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차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 현황

- 내국법인이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공제 ('16.12.31까지)
- 산업혁신운동\*의 경우 '16년 현재 76개 기업(대기업 57개, 중견 10개, 공공기관 9개)이 재원 출연

\*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 1차협력사(중견) · 전문가 지원 하에 기술혁신, 작업 환경·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성과를 공유

### □ 문제점

-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구조는 원사업자(대기업), 1차협력사(중견기업), 2·3차 협력사(중소기업)로 이루어진 수직적·다단계 구조
- 상생협력은 대기업(원사업자) → 중견기업(1차협력사) → 2·3차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세법은 중견기업을 대기업이 아님에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정의
-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반성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지원을 차등할 필요

### □ 건의사항

- 일몰연장 ('16.12.31까지 → '19.12.31까지)
- 내국법인 7% 공제 → 대기업 7%, 중견기업 10% 공제

## 5 중견기업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영구화

(「관세법」 제95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 □ 현황

- 중소·중견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구성기기, 핵심부분품 등에 대하여 관세 50%를 감면

\* 중견기업 기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품목은 일몰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중견기업은 올해 수입신고 분까지만 감면

### □ 문제점

- '14년 기준, 중견기업이 신규 신청한 관세감면 물품의 80%가 일본 (FTA미체결국) 수입품으로, FTA를 활용할 수 없는 기업에게는 본 제도에 대한 체감도 높음
- 업계의견에 따르면 국내에 해당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거나, 생산기업이 있더라도 기업 수요를 충족할만한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설비도입을 수입에 의존
- 또한, 해당설비 수입 후 추가로 구성기기·관련부분품 등을 도입할 경우에도 기존설비에 규격과 기능 등을 맞춰야 하므로, 수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설비투자는 중요한 만큼 중견기업도 관세감면을 영구화하여 투자지원 필요

### □ 건의사항

- 중견기업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영구화

##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서비스업 중견기업까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 현황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업종 등에 따라 5~30% 법인세(소득세) 감면 (‘17.12.31까지)

\* 제조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출판업,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등

### □ 문제점

- 업종별 중견기업 분포를 보면, 제조업 44.7%(1,331개), 비제조업 55.3%(1,648개)로 비제조업이 다수
  - 비제조업 중 도·소매업 23.1%(381개), 출판·통신·정보서비스업 16.0%(263개), 부동산·임대업 10.3%(170개)이 49.4%로 절반에 가까움
-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으로 중견기업 관련 세법개정은 생산성향상시설,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주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개정되었는데,
- 비제조업(서비스업)은 대규모 설비투자 보다는 주로 우수인력, 무형자산을 통해 성장하므로, 제조업에 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이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기업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는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서비스업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면, 서비스업 투자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 건의사항

- 일정요건을 갖춘 서비스업 중견기업까지 확대

## 7 기업소득환류세제 중견·대기업 과세기준을 차등

(「법인세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93조)

### □ 현황

- 기업소득에서 투자, 주주배당, 임금증가분을 차감한 금액이 일정 비율(30%/80%)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 납부 ('15.1.1부터 '17.12.31까지)
- 기업이 ① 또는 ② 중 선택할 수 있음
- ① [당기소득 × 과세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 10%(세율)
- ② [당기소득 × 과세기준율(30%) - (임금증가+배당액 등)] × 10%(세율)
- \* 적용기업: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단,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기업

### □ 문제점

- '14년 말 기준 중견기업 2,979개사 중 자기자본(자산-부채) 500억원 초과 기업은 39.5%인 1,177개사로, 적지 않은 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환류세를 실제 부담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될 우려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견기업 443개사(전체 1,481개사 대비 29.9%), 대기업 202개사(전체 1,266개사 대비 15.9%)가 세부담 예상<sup>21)</sup>
- 또한, 자산규모가 큰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 자산에 따른 역진성을 지적<sup>22)</sup>

### □ 건의사항

- 중견기업 대기업 과세기준을 차등

21)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4.10

22) 국회예산정책처, '2014 조세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2014.12

## 8 기업소득환류세제 해외투자·M&A 투자범위에 포함

(「법인세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93조)

### □ 현황

-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범위에 해외투자와 M&A는 제외

### □ 문제점

-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와 진출은 필수

- 2006년 이후 기업의 해외현지생산이 IT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직접투자액이 외국인직접투자액을 상회

\* ('06~'12) 해외직접투자: 231.6억달러, 기간 중 평균증가율: 32.6%/ 외국인직접투자 97.7억달러, 기간 중 평균증가율: 8.3% (한국은행, 2014)<sup>23)</sup>

- 중견기업 63.2%가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8.1%는 향후 진출을 고려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 해외 투자는 필수요건 (중견련, 2012)<sup>24)</sup>

- 또한, 시장수요, 인건비, 국내규제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불가피한 경우 발생

-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세법상 국내투자와 해외 투자를 차별하는 점은 글로벌 시대를 역행

- M&A의 경우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성장한계와 위기에 놓인 회사를 희생시키는 역할

- '15년 국내 M&A 시장은 77조원 수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sup>25)</sup>

23) 한국은행, '우리나라 FDI의 순유출 전환요인과 시사점', 2014.9

24)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해외진출 수요조사', 2012 (541개사 응답)

25) KDB대우증권, 'M&A 전성시대', KDB DAEWOO DAILY, 2015.12.15

- 다만, 대기업은 사업다각화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상태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중요한 시점이기에,
- 당분간 Middle Market M&A(중간규모거래)에서는 국내 중견 기업이 인수주체로 부각될 것으로 분석 (중견련, 2014.5)<sup>26)</sup>
- 특히, 기활법 시행, 삼각분할합병 허용 등 구조조정 정책지원으로 올해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정작 세법에서는 M&A를 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 건의사항

-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범위에 해외투자·M&A 포함

---

26) 최재혁, '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M&A', 중견기업연합회 오피니언, 2014.5

고용

# 1 청년고용증대세제 중견기준 매출액 5천억원까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 □ 현황

- 직전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은 (증가인원 × 중소·중견: 500만원, 이 외: 200만원)을 공제('15.1.1부터 '17.12.31까지)

## □ 문제점

-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109만명<sup>27)</sup>에 이르고, 금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고용 급감 우려
  - 청년 실업률은 9.5%, 구직단념자는 51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6천명 증가 (통계청, 2016.3)
- 중견기업 기준을 5천억원까지 확대 시 중견기업 246개가 추가, 기업 수는 전체 중견기업의 8.3%에 불과하나,
  - 이들 기업의 평균재직자는 574.8명으로 3천억원 미만 기업 평균 245.3명을 훨씬 상회, 신규채용은 160.0명으로 3천억원 미만(76.1명)보다 2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 능력이 월등

2014년 중견기업 재직자 및 신규채용 수

매출액	기업수(개)	재직자(명)		신규채용(명)	
		전체	평균	전체	평균
1백억원 미만	393	10,934	27.9	1,787	4.5
1백억원~5백억원 미만	882	155,818	176.6	57,087	64.7
5백억원~1천억원 미만	347	107,639	310.2	38,611	112.2
1천억원~2천억원 미만	577	179,649	311.4	37,230	65.3
2천억원~3천억원 미만	330	166,201	503.7	56,218	172.6
소 계(평균)	2,529	620,241	245.3	190,933	76.1
3천억원~5천억원 미만	246	141,388	574.8	38,102	160.0
5천억원~1조원 미만	153	127,785	835.2	32,303	213.9
1조원 이상	51	95,245	1,867.6	10,112	198.2
합 계(평균)	2,979	984,659	330.5	271,450	92.2

자료: 중소기업청·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6.5  
\* 내국인 기준(외국인 근로자 제외)

27)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2016년 업무보고

- 5천억원까지 확대하더라도 조세지출액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을 통하여 상쇄 가능할 것

## □ 건의사항

- 중견기업 기준 매출액 3천억원 → 5천억원까지 확대

##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견까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 현황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 장애인은 '14.1.1)부터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 70%감면

### □ 문제점

- 외형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클지라도 대기업에 비해 고용·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
- 중견기업 절반이상(54.5%)이 매출액 1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고용애로 유사
  - 매출 1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초임은 2,911만원으로 중소기업 초임(2,702만원)과 차이가 거의 없고<sup>28)</sup>,
  - 입사지원 경쟁률도 연구개발직(5.4:1), 생산직(7.4:1)으로 중소기업(6.0:1)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음<sup>29)</sup>
-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게 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유발하고, 유효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건의사항

- (현행) 중소기업만 지원 → (건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28) 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4 중견기업 현황', 2015.1

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 인력 애로요인 심층 조사분석 연구', 2015.1

###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견까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 현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50% 또는 100% 공제 ('18.12.31까지)

\* 청년(15세이상 ~29세이하): 고용증가인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 × 100%

\*\* 청년 외: 고용증가인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0%

#### □ 문제점

- 중견기업 74.6%가 B2B기업<sup>30)</sup>으로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 일정수준에 연봉과 복지를 갖췄더라도 기업인지를 중시하는 구직자를 채용하는데 기업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매우 어려움
  - 실제 조사결과,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31.3%)를 신규채용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 (중기청, 중견련, 2013<sup>31)</sup>)

“대기업 못지않게 우수한 중견기업이 많다는 인식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분위기와 중견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중견기업 CEO,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중견기업 간담회 ('15.11.3) -

- 최근 정부는 R&D, 투자, 가업승계 등 주요세제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한 반면,

30) 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4 중견기업 현황', 2015.1

31) 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3 중견기업 애로요인 실태조사'

- 중견기업 채용 관련 제도는 청년고용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가 있으며,
- 이 외 주요 고용세제\*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

\* 조특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 □ 건의사항

- (현행) 중소기업만 지원 → (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

## 4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 □ 현황

\* 스톡옵션: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 근로의욕 증대 등을 위해 자기회사 주식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 (과세방식)

- 벤처기업 근로자에 한해 ① 근로소득세(5년간 분할납부) ②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적격요건 충족한 경우)로 과세 중 택일  
(※ 이 외 기업은 주식취득시 근로소득세 납부)
- 중소·벤처는 11%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일반기업은 연봉과 합산하여 최고 41.8%과세

### □ 문제점

- 일반기업 직원은 스톡옵션을 취득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 최대 41.8%(지방소득세 포함)<sup>32</sup>부담, 주식을 부여받는 유인이 부족
  - 예를 들어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예: 1억원 이하)을 증여하면 증여세 10%로 과세하는 반면, 직원에게 매수하면 근로소득세 35%로 부과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장점이 퇴색
- 또한, 주식처분시점이 아닌 취득시 과세하므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벤처는 처분시 과세)
  - 특히, 비상장기업 주식은 유동성이 제한되어 매각이 어려울 수 있는데 취득 시 미리 과세하는 점은 임직원에게 부담으로 작용

32) 중소기업청, '2015년 스톡옵션 세제관련 개선사항'

## □ 건의사항

-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과세시기를 취득시 → 주식 처분시로 완화

**구조조정 외**

# 1 사업재편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제10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47조2호 등)

## □ 현황·문제점

-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간주취득세 부과 (지방세법 제7조제5항)
    - 단, 법인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주주의 주식 취득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수량적 기준만 충족하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되고
    -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자산이 경제적·실질적으로 과점주주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이상신, 2010)<sup>33)</sup>
  -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동일물건에 대해 과점주주에게 재부과하는 점은 “이중과세”
  - 특히, 간주취득세는 M&A를 통한 적극적인 기업성장전략에 걸림돌로 작용
    - 예를 들어 자산 1,000억원 수도권 소재기업을 인수(지분 100%)하려면, 간주취득세 비용만 100억원을 추가 부담 (전경련, 분석자료, 2015)<sup>34)</sup>
- \* 수도권 간주취득세율(10%): 취득세 8%+지방교육세 1.2%+농특세 0.8%

33) 이상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및 자진 신고납부행위의 효력', 조세연구 제10권 제3집, pp.206-238, 2010.12

34)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2015.10

- 본 제도는 입법례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취득세제를 운영중인 일본도 간주취득세 규정 없음

## □ 건의사항

-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 배제

---

## 2 이월결손금 승계 확대

---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 제45조제1항 등)

## □ 현황·문제점

-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 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감면·세액공제 등을 승계하게 되는데, 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 소득금액 내에서는 공제 불가
- 합병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해, 결손금은 많지만 사업재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 경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구분 없이 공제 허용 필요 (경제계 기활법 공동건의문, 2015.8)<sup>35)</sup>

## □ 건의사항

- 적격합병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 구분 없이 공제 허용

---

35) 중기중앙회, 중견련, 대한상의, 전경련, 상장협의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한 의견', 2015.8

### 3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76조의8)

#### □ 현황·문제점

- '10년부터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지배하는 경우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
  - 제도도입 때부터 현재까지 완전자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분율 완화에 대한 검토가 요구
-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세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제도인데, 주요국에 비해 지분율이 엄격하여 실효성 확대가 필요
  - \* (프랑스) 95%, (미국) 80%, (영국) 75%, (독일) 50%
- 구조조정 이후 결손금 상계, 부동산 양도거래 과세이연 등 연결납세적용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기대

#### □ 건의사항

-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요건 완화 (현행) 100% → (건의) 80%

## 4 국외특수관계법인 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손금산입 허용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4조, 제5조, 「법인세법」 제19조, 제28조, 제52조)

### □ 현황 및 문제점

-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 소득계산 시 손금산입되나,
  -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 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과세당국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채권이라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지연이자는 손금불산입
-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 절감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 해외진출 초기단계인 경우, 저조한 사업실적과 결손금 발생 등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모기업에 채권을 정상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 수출부진, 중국성장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경제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채권회수가 지연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연으로 인한 과세조정이 상당한 부담

### □ 건의사항

- 중소·중견기업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채권회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한 범위 내에서 지연되는 경우 인정이자만 과세

**가업승계·일감몰아주기**

# 1 기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 □ 현황

- (기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만 적용
- (기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
  - \* 10년 이상 : 200억, 15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500억

## □ 문제점

- 60~70년대 산업화시기에 창업한 중견·중소기업은 CEO의 고령화로 인해 기업승계가 현재 최대 이슈
- 기업승계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해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심지어 폐업·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특히, 중견기업의 기술노하우, 일자리, 사회적 책임 등 유·무형의 자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상과 공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 □ 건의사항

- (공제대상) 매출 3천억원 미만 →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 (공제한도)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공제한도를 500억 → 1,000억원

## 2 중소·중견 기업승계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 현황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간주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

\* 중소기업은 '17.12.31까지 할증적용 배제

기업규모별 할증평가율

구 분	중소기업	이 외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 할증평가 시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은 지분에 합산하여 계산

### □ 문제점

-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와 최대 할증률 30%까지 감안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65%로 세계 최고 수준
- 부모로부터 받은 사업용 자산·주식의 최대 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계는 불가능에 가까움
  - 실제 조사결과, 중견기업은 기업승계 걸림돌로 상속·증여세 부담(63.7%), 사회적 인식저조(11.8%), 기업승계 컨설팅·정보부족(6.4%) 순으로 응답<sup>36)</sup>
- 비상장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는 문제<sup>37)</sup>가 지속적으로 제기

36) 중기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6.5

37) 안경봉, 홍순기,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26, pp.9-40, 2013

(안경봉·홍순기, 2013)

- 이미 과대평가된 주식에 할증평가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이중할증 문제
- 대다수 기업은 현금성 자산 부족<sup>38)</sup>으로 인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세금 납부를 할 수밖에 없음
  - 상장기업의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된 상증법상 평가액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 승계 후 최대주주 지분을 하락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우려
- 할증평가는 가업승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기업 의욕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가업승계제도 실효성을 저해

## □ 건의사항

- 중소·중견 가업승계 주식 할증평가 폐지

38) 중소기업(1,879개사) 조사결과 48.6%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자산이 부족하다고 응답 (상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 의원 검토보고서, 2015.10)

### 3 기업상속공제 사전요건 판단시 업종변경 전 업력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 □ 현황

- 기업상속공제 사전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이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기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변경 후 최초로 재화·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  
(국세청 유권해석 법령해석과-2808, 2015.10.28)
- 상증법상 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함  
(국세청 유권해석 상증, 재산세과-1135, 2009.06.09)

#### □ 문제점

- 글로벌 경쟁 심화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업종간의 융·복합이 필수
  - 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주력사업 비중을 조정하게 되는 경우 창업 당시의 주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정부도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제정하고,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종전환을 적극 지원
  - 조사결과, 중견기업은 경영애로요인<sup>39)</sup>으로 ‘내수부진’(61.2%) 다음으로 ‘업체 간 경쟁심화’(53.0%)를 꼽고 있어 사업 다각화에 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은 매출액이 큰 업종으로 판단하는데 환경변화에 따라 제품별 매출액은 변동하

39)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3월 경기전망조사’, 2016.3 (219개사 조사)

므로 업종 유지가 어려운 상황도 우려

- 현행 상증법상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두고 업종전환·변경을 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요건 판정 시 업종변경 전 업력을 불인정하고 있어 사업전환을 장려하는 정부정책방향과도 대립

## □ 건의사항

- 가업상속공제 '10년 경영 사전요건' 판단 시 업종변경 전 업력을 포함하여 계산

## 4 기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 □ 현황

- 피상속인이 법인의 주주인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친족 등)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해야 함
- 상속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 지분율을 충족해야 하고, 단 한번이라도 50%(상장 30%)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기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510, 2010.7.14.)

### □ 문제점

- 기업상장을 위한 투자유치(벤처투자)나 기업공개(상장) 등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 하락은 불가피
- 현행 규정은 최대지분율 유지를 위해 투자유치와 성장을 포기하고 현상유지만 하려는 또 다른 '피터팬 증후군'이 유발될 우려

### □ 건의사항

- 피상속인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을 40%(상장법인 20%) 이상 기업으로 완화 필요

## 5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

### □ 현황

- 공제 후 10년간 각 연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개연도 평균의 80%이상 매년 유지하고,
  -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전체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개연도 평균의 120%이상 (중소: 100%) 유지

### □ 문제점

- 고용유지의무 기준을 '정규직 근로자수'로 제한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저해
  - \* 독일은 가업승계 후 고용유지 판단기준을 '임금총액'으로 일원화('08)
-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투자 및 근로자수가 줄어들 수 있어 기업이 고용유지의무 실현가능성을 예상하기에 한계
- 사실상 10년간 120%이상 고용 유지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움

### □ 건의사항

- (1안) 근로자수 유지 요건을 (현행) 정규직 근로자수 → (건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수까지 완화하거나, 독일과 같이 임금총액 유지
- (2안) (현행) 120%이상 정규직 유지 → (건의) 100%이상 정규직 유지

## 6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상속세와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제68조)

### □ 현황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5년,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15년 분할납부가 가능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세 목			연부연납기간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 재산	50% 미만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납부
		50% 이상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
	일반상속재산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자료: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15

### □ 문제점

- 상속과 증여는 가업승계 시기의 차이일 뿐인데, 세법상 상속을 우대할 이유는 부족
- 특히, 가업승계는 사전계획이 중요한 만큼 피상속인(부모)이 생존했을 때 증여를 통한 빠른 세대교체가 필요
- '세액감면'이라기보다 '납세편의' 성격인 연부연납제도를 기업이 최대한 활용하여 원활한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상속세와 같이 15년으로 확대할 필요

### □ 건의사항

-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5년 → 15년)

## 7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한도 100억→500억으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 현황

- 증여자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생전에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100억원 까지 낮은(10~20%) 세율 적용

### □ 문제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08년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도입되었으나,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한도가 현저히 낮아 실효성 및 활용도가 낮은 상황

-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공제율 100%)까지 확대

\* 독일의 경우 상속과 증여를 동일한 재산 이전으로 보고 세율 및 공제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한도 없음)

- 특히, 최근 산업현장의 자동화 시설에 따른 기업의 자산가치 상승과 경제규모 증가 등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

### □ 건의사항

- 사전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 → 500억으로 확대

## 8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인도 기업상속공제 허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 □ 현황

- 세법상 기업승계제도는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만 지원

### □ 문제점

- 세법상 기업상속재산은 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과 주식만 해당되고 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하는 만큼,
  -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영속’의 개념으로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 기업이 영속하면 일자리 마련, 소득증대, 산업성장, 지역경제 공헌, 세금 납부 등 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 가능
- 장수기업은 국가발전에 버팀목으로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면에서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각국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성화를 유인하고자 상속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추세
- 우리나라도 장수기업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일정요건과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동업자 등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 ‘기업승계세제’ → ‘기업승계세제’ 전환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필요<sup>40)</sup>

### □ 건의사항

- 자녀승계만 공제 →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인도 공제 허용

40) 이우용, 서희열, ‘법인의 기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3집, pp.67-94, 2015.12

## 9 공익법인 주식출연 증여세 과세기준 5% → 30%로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7조)

### □ 현황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음
- 다만,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

### □ 문제점

- 과거 일부 대기업 오너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공익법인에 대기업 주식을 증여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하여,
  - '91년 처음 도입된 규정인데 이런 의도가 전혀 없는 선의의 기부자들이 위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 발생
- 선진국의 입법사례(영국과 독일은 이런 제도가 아예 없고, 미국은 특정기업 주식 20% 초과분부터 과세, 일본은 특정기업 주식 50% 초과분부터 과세)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 □ 건의사항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 기준을 현행 '5~10% 초과'에서 '30~50% 초과'로 대폭 상향

## 10 상속·증여세율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 현황

- 상속·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운영되며, 최대 50%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 문제점

-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26%)의 2배 수준으로 일본을 제외하고 OECD국가 중 최고 수준
- 소득세와의 최고세율을 비교하여도 상대비중이 크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국가가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게 운영  
(조세연, 2014)<sup>41)</sup>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비교(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국가)

(단위: %)

국가	상속세율	소득세율	국가	상속세율	소득세율
영국	40	45	남아프리카	20	40
네덜란드	20	52	그리스	10	42
스페인	34	45	터키	10	35
독일	30	45	아이슬란드	10	31.8
벨기에	30	50	노르웨이	10	25.75
터키	10	35	폴란드	7	32
아일랜드	33	41	이탈리아	4	43
칠레	25	40	스위스	칸톤별	13.2
핀란드	19	31.75	브라질	8	27.5
덴마크	15	25	대만	10	40
슬로베니아	14	5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4

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4

- 상증세 최고세율 50%와 최대 할증률 30%까지 감안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우리나라 최고실효세율은 65%로 세계 최고 수준

## □ 건의사항

-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11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 현황

- 정상거래비율<sup>42)</sup> 30% (중소·중견(매출 5천억원): 5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단,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 과세대상은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중소·중견: 10%, 일반: 3%)을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 문제점

#### ① 일감몰아주기 세부담 대기업 축소, 중소·중견기업 증가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 편법 증여 또는 중소기업 보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중소·중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
- 2015년 일감몰아주기 세액은 749억원으로 '13년(1,859억원)의 40%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15년 일감몰아주기 세액이 대기업은 직전년도 대비 절반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 중소기업 11억원, 중견기업(일반기업)은 20억원 증가하여 세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sup>43)</sup>
- 이는 중소·중견기업은 계열사 간 거래가 필수인 경우가 많고 (부품산업), 대기업에 비해 과세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42) 정상거래비율: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차지비율

43)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국정청 국정감사 자료

## ② 산업 및 업종특성상 수직계열화가 필수인 경우에도 과세

- 중견기업은 평균 10.9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97.5%가 계열사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 (중견련, 2013년 자체조사)
  - \* 기업규모별 계열회사 평균보유 수: 대기업 64개, 중견: 10.9개, 중소기업: 4.8개
  - 계열사 거래가 필요한 이유로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45.4%), 기술유출방지(25.5%), 거래비용 절감(23.6%)순으로 응답
- 다수 중견기업은 기술노하우 확보, 핵심역량 강화, 타업종 생산 불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수직계열화가 필수
- 특히,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부득이하게 계열사 간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까지 과세하는 것은 문제

### 중견기업 A사 사례

-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실협력업체를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승계
- 합병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조직문화, 복리후생, 급여, 재무상태 등 현실적으로 부담이 증가하여 계열기업으로 인수
- 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감을 제공했으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

### 중견기업 B사 사례

-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부품을 국산화, 안정적으로 부품을 수급하고자 자회사설립
- 자회사는 2차 벤더로서 기술노하우를 축적중이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해 증여세 납부

- 상증법과 달리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계열사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행위에서 제외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38조, 별표1의4

### ③ 중소·중견기업 과세요건 충족가능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 ○ 정상거래비율 기준(중소·중견: 50%, 일반 30%) 관련

- 관계기업에 대한 평균매출비중을 보면, 대기업 67.4%, 중견(일반) 72.3%로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국세청)

#### ○ 특수관계법인 기준(30%) 관련

-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은 경영자가 최대주주이면서 대기업에 비해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단순한 경우가 많아 과세대상인 특수관계법인 기준인 30% 이상을 상회하는 기업이 다수
- 또한, 근래 일부 대기업에서 지분매각·합병 등으로 지분율을 낮추어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과세(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를 회피하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부각

### □ 건의사항

#### ○ 중소·중견기업 과세제외